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732호 2022. 11. 8.(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37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1
남해군 조례 제2638호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6
남해군 조례 제2639호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남해군 조례 제2640호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남해군 조례 제2641호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남해군 조례 제2642호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21
남해군 조례 제2643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남해군 조례 제2644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남해군 조례 제2645호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34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15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 43
남해군 규칙 제1216호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48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50
남해군 고시 제2022-1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51
남해군 고시 제2022-146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 52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325호 남해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6
남해군 공고 제2022-132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60
남해군 공고 제2022-133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61
남해군 공고 제2022-134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62
남해군 공고 제2022-1344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 공고문 ····· 64
남해군 공고 제2022-1353호 군계획시설(꽃별테마공원 : 도로, 주차장, 녹지)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 66
남해군 공고 제2022-1357호 신비천 외 9개소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CCTV 설치 행정예고 ·· 70
남해군 공고 제2022-1363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4
남해군 공고 제2022-1372호 2022년도 제1회 남해군 환경공무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80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8호 2022년 남해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85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37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해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 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 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 란 정책을 입안·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자체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남해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 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① 책임관은 매년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와 사업부서에 대하여「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군 수 ○○○ 부군수 ○○○ 국 장 ○○○ 과 장 ○○○ 팀 장 ○○○ 주무관
○ 내용	‘00.00.00	○○○ 국 장 ○○○ 과 장 ○○○ 주무관 〈관련자〉 ○○○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④ 사업부서 : 소속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군정현안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자치법규 개폐 등 / 기타 中 택 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XX-1, 20XX-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남해군 조례 제2638호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이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이란 군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부자” 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말한다.
4. “답례품” 이란 군이 기부자에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군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군 지역 화폐,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7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답례품 선정위원회)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그 중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26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7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2.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4.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기부금 모집 · 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639호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남해군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40호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으로, “제36조제1항” 을 “제36조제2항”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 을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음식점” 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를 “확인한 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아동급식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36조제4항” 을 “영 제36조제5항”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41호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은 부군수,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정보공개업무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14조 중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42호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 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8조제1호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 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제8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물품 및 서비스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필수업무 지원 담당 국장, 필수업무 지원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43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86조제2항제1호” 를 “제86조제3항제1호”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를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開口部)(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로 한다.

제4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차는 100분의 25
2. 2년차부터는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이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644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에 따라” 를 “군수는” 으로 하고, “해당 해수욕장 지역번영회” 를 “영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해군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 남해군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단 관할 해역이 나뉘는 경우 다수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남해군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남해군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남해군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0조제8항의 “해양수산과” 를 “해수욕장 업무” 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가 사정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 안 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징수한다” 를 “징수 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장기간” 을 “운영기간”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2(해수욕장 내 허가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수욕장 내에서의 상행위
2. 해수욕장 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백사장에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4.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5. 해수욕장의 토석·자갈·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6. 해수욕장 내 주차장, 야영장, 쓰레기 집하시설, 도로, 교량이 아닌 곳에「도로교통법」제2조의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수욕장의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2.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해수욕장 이용 행위 및 인근 주민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4.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허가·인가·면허·승인 또는 협의 등을 요하는 행위일 때 그 허가 등을 득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2.「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을 이미 받거나 완료한 경우
3. 군수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또는 행사 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는 경우
4. 군수로부터 법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야영장 및 평상의 경우에는 5할로 감면한다.
7.「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족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상주 은모래비치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샤워장	1인	1회	2,000원	※ 야영장이용객(4인까지) 무료
야영장	개소 당	1일	50,000원	※ 종량제 봉투(20ℓ1매) 무상 제공 ※ 1일 기준: 14시~ 익일 12시
육상 물놀이장	1회	1회	5,000원	※ 만 13세 이하만 이용 가능

□ 송정 솔바람해변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일반샤워장	1인		1회	2,000원	※ 자동차형야영장이용객(4인까지) 무료
코인샤워장	코인당		1개	500원	
야영장	개소 당	일반형	1일	20,000원	※ 종량제 봉투(20ℓ1매) 무상 제공 ※ 1일 기준: 14시~ 익일 12시
		자동차형		50,000원	

□ 두곡 · 월포 해수욕장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샤워장	1인		1회	2,000원	
야영장	평상	소	1일	15,000원	※ 종량제 봉투(20ℓ1매) 무상 제공 ※ 1일 기준: 방문예정시간 기준 24시간 ※ 차박은 캠핑카 트레일러 등을 포함함.
		대		30,000원	
	데크시설			30,000원	
	차박			15,000원	

□ 사촌 해수욕장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샤워장	1인		1회	2,000원	
야영장	개소당	소	1일	20,000원	※ 1일 기준: 방문예정시간 기준 24시간 ※ 차박은 캠핑카 트레일러 등을 포함함.
		중		25,000원	
		대		30,000원	
		차박형		15,000원	

□ 설리 해수욕장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일반샤워장	1인		1회	2,000원	
코인샤워장	코인당			500원	
평상	개소당(반일)	소	1일	20,000원	※ 반일 기준: 방문예정시간 기준 12시간 ※ 전일 기준: 방문예정시간 기준 24시간
		대		30,000원	
	개소당(전일)	소		30,000원	
		대		50,000원	

[별지 서식]

해수욕장 [ ] 상 행 위 [ ] 시 설 물 설 치 [ ] 꽃 불 놀 이 [ ] 무선동력기조종 [ ] 토 석 등 채 취 [ ] 차 마 진 입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행위	시설물설치	무선동력기	토석등 채취	차마출입	꽃불놀이
종 류	업종	시설물명	동력기구종류	채취종류	차종(차명)	꽃불류:
					등록번호	수 량:
목 적						
기 간	. . . : 부터 . . . : 까지					
장 소	해수욕장명: 세부 구역:					
기타사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수욕장 내 사유지 등 신청지에 권리권자가 있는 경우 권리권자의 동의서.(단, 다른 허가 등에서 이미 관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타 법상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상행위의 경우) 3. 자동차등록증 등(차마출입의 경우) 4. 사업계획서(위치도, 원상복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을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남해군 조례 제2645호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남해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 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남해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경상남도 계획과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남해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사람과 기존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시책·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교육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군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군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비영리 법인·단체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 및 대책으로 본다.

제4조(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15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규칙】

남해군 규칙 제1199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해군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심사 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와 사업내역서(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로 대체한다)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에 해당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한 차례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216호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11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3조 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 을 “실장, 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담당관·과장” 을 “실장·단장·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장·소장” 을 “실장·단장·과장·소장”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담당관” 을 “실, 단”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본청” 을 “공통사무”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속기관” 을 “본청”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3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별지는 남해군 홈페이지 참고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상덕천(지방하천)
2. **성 명** : 김수0
3. **주 소** : 남해군 남면 고실로 00
4. **점용목적** : 우수관로매설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상가리 1305-1번지
6. **점용면적** : 5㎡
7. **점용기간** : 2022. 10. 25. ~ 2026.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2-1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하점0

3. **주 소** : 부산 진구 월드컵대로 00

4. **점용목적** : 태양광 발전소 진입교량 건설

5. **점용위치** : 삼동면 봉화리 2156-21 인근

6. **점용면적** : 영구427㎡, 일시1,233㎡

7. **점용기간**
   - 당초 : 2018. 2. 21. ~ 2022. 10. 31.
   - 변경 : 2018. 2. 21. ~ 2023. 3. 31.

남해군 고시 제2022-146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105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16441	도근점	중부	250685.464	274922.142	50.403	034°50'57.57877"	127°49'09.16551"	20220824	서면 남상리 1056-6	철재	남해군청	
2	16442	도근점	중부	250625.737	275006.211	67.468	034°50'55.61848"	127°49'12.45519"	20220824	서면 남상리 1084	철재	남해군청	
3	16443	도근점	중부	250601.392	275056.057	75.456	034°50'54.81531"	127°49'14.40926"	20220824	서면 남상리 1081	철재	남해군청	
4	15303	도근점	중부	238260.798	278438.927	6.166	034°44'13.47805"	127°51'23.41187"	20220825	남면 선구리 1320	철재	남해군청	
5	15304	도근점	중부	238304.505	278456.864	6.560	034°44'14.89127"	127°51'24.13154"	20220825	남면 선구리 1320	철재	남해군청	
6	15305	도근점	중부	238326.556	278459.989	8.037	034°44'15.60589"	127°51'24.26174"	20220825	남면 선구리 1320	철재	남해군청	
7	18256	도근점	중부	257794.117	284387.262	16.401	034°54'45.55986"	127°55'24.28012"	20220826	설천면 문항리 233	철재	남해군청	
8	18257	도근점	중부	257810.025	284458.471	20.855	034°54'46.05470"	127°55'27.09075"	20220826	설천면 문항리 254	철재	남해군청	
9	18258	도근점	중부	257802.497	284489.873	24.988	034°54'45.80102"	127°55'28.32489"	20220826	설천면 문항리 253	철재	남해군청	
10	11376	도근점	중부	243548.411	285866.033	70.240	34°47'2.8937	127°56'17.2765	20220829	이동면 용소리 78-1	철재	남해군청	
11	11377	도근점	중부	243621.821	285853.518	79.070	34°47'5.2794	127°56'16.8113	20220829	이동면 용소리 74-1	철재	남해군청	
12	11378	도근점	중부	243719.139	285835.338	92.510	34°47'8.4425	127°56'16.1320	20220829	이동면 용소리 산24-4	철재	남해군청	
13	18259	도근점	중부	259481.549	284221.619	41.617	034°55'40.35985"	127°55'18.36784"	20220830	설천면 금음리 581-4	철재	남해군청	
14	18260	도근점	중부	259459.589	284182.976	39.076	034°55'39.65886"	127°55'16.83750"	20220830	설천면 금음리 581-4	철재	남해군청	
15	18261	도근점	중부	259407.621	284122.323	35.461	034°55'37.99084"	127°55'14.42921"	20220830	설천면 금음리 581-17	철재	남해군청	
16	17449	도근점	중부	251878.219	282313.997	3.965	34°51'34.2232"	127°54'0.5227"	20220901	고현면 이어리 719-1	철재	남해군청	
17	17450	도근점	중부	252007.989	282317.260	3.067	34°51'38.4329"	127°54'0.6971"	20220901	고현면 이어리 259-6	철재	남해군청	
18	17451	도근점	중부	252089.158	282499.308	3.849	34°51'41.0134"	127°54'7.892"	20220901	고현면 이어리 157-4	철재	남해군청	
19	18262	도근점	중부	255734.822	281841.298	120.006	034°53'39.49379"	127°53'43.27227"	20220902	설천면 비란리 산91-4	철재	남해군청	
20	18263	도근점	중부	255688.180	281856.826	109.835	034°53'37.97592"	127°53'43.86736"	20220902	설천면 비란리 산93-6	철재	남해군청	
21	18264	도근점	중부	255617.964	281888.868	95.213	034°53'35.68839"	127°53'45.10444"	20220902	설천면 비란리 산93-8	철재	남해군청	
22	18265	도근점	중부	255614.712	281866.002	94.665	034°53'35.58948"	127°53'44.20283"	20220902	설천면 비란리 산92-6	철재	남해군청	
23	16444	도근점	중부	248152.973	275364.454	93.011	034°49'35.28865"	127°49'25.75591"	20220831	남해읍 아산리 301-2	철재	남해군청	
24	16445	도근점	중부	248176.342	275342.157	94.632	034°49'36.05286"	127°49'24.88611"	20220831	남해읍 아산리 307	철재	남해군청	
25	16446	도근점	중부	248288.069	275303.069	96.116	034°49'39.68851"	127°49'23.38409"	20220831	남해읍 아산리 1432	철재	남해군청	
26	11379	도근점	중부	244652.040	288406.269	28.878	34°47'37.921"	127°57'57.594"	20220906	이동면 무림리 738-1	철재	남해군청	
27	11380	도근점	중부	244607.508	288392.614	26.427	34°47'36.4804"	127°57'57.0401"	20220906	이동면 무림리 688-4	철재	남해군청	
28	11381	도근점	중부	244517.943	288373.564	21.805	34°47'33.5803"	127°57'56.2569"	20220906	이동면 무림리 398	철재	남해군청	
29	17452	도근점	중부	256891.646	279481.014	68.436	034°54'17.70359"	127°52'10.71915"	20220907	고현면 대사리 1223-1	철재	남해군청	
30	17453	도근점	중부	256833.499	279505.072	57.977	034°54'15.81016"	127°52'11.64676"	20220907	고현면 대사리 1238-12	철재	남해군청	
31	17454	도근점	중부	256784.851	279474.228	48.628	034°54'14.24039"	127°52'10.41532"	20220907	고현면 대사리 1267-8	철재	남해군청	
32	17455	도근점	중부	256748.986	279506.541	38.141	034°54'13.06757"	127°52'11.67573"	20220907	고현면 대사리 1392	철재	남해군청	
33	18266	도근점	중부	257951.302	284317.776	16.981	034°54'50.68069"	127°55'21.60024"	20220908	설천면 문항리 108-1	철재	남해군청	
34	18267	도근점	중부	257929.029	284257.932	21.037	034°54'49.97591"	127°55'19.23494"	20220908	설천면 문항리 1398	철재	남해군청	
35	18268	도근점	중부	257894.520	284344.671	15.985	034°54'48.83029"	127°55'22.63900"	20220908	설천면 문항리 218	철재	남해군청	
36	19517	도근점	중부	253960.066	293755.157	3.407	34°52'38.2041"	128°01'31.7148"	20220919	창선면 가인리 615-39	철재	남해군청	
37	19518	도근점	중부	253999.517	293793.139	3.028	34°52'39.4714"	128°01'33.2261"	20220919	창선면 가인리 615-47	철재	남해군청	
38	19519	도근점	중부	254019.750	293877.268	4.179	34°52'40.0999"	128°01'36.5465"	20220919	창선면 가인리 607-8	철재	남해군청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39	19520	도근점	중부	254006.336	293944.282	6.529	34°52'39.6424"	128°01'39.1794"	20220919	창선면 가인리 624-2	철재	남해군청	
40	19521	도근점	중부	254074.392	294058.441	11.301	34°52'41.8125"	128°01'43.7015"	20220919	창선면 가인리 640-5	철재	남해군청	
41	18270	도근점	중부	256268.465	283930.022	53.747	034°53'56.19484″	127°55'05.71890″	20220920	설천면 진목리 410-1	철재	남해군청	
42	18271	도근점	중부	256300.659	283860.971	61.449	034°53'57.25995″	127°55'03.01114″	20220920	설천면 문항리 796	철재	남해군청	
43	18272	도근점	중부	256327.042	283815.374	60.155	034°53'58.12952″	127°55'01.22495″	20220920	설천면 문항리 산133-1	철재	남해군청	
44	18273	도근점	중부	256415.560	283766.767	54.596	034°54'01.01605″	127°54'59.34259″	20220920	설천면 진목리 1684	철재	남해군청	
45	18274	도근점	중부	256463.518	283722.431	57.813	034°54'02.58525″	127°54'57.61381″	20220920	설천면 진목리 산57-1	철재	남해군청	
46	18275	도근점	중부	256482.621	283680.874	59.074	034°54'03.21742″	127°54'55.98404″	20220920	설천면 진목리 산55-6	철재	남해군청	
47	17459	도근점	중부	252472.187	282469.507	3.795	034°51'53.45004″	127°54'06.85457″	20220922	고현면 이어리 86-2	철재	남해군청	
48	17460	도근점	중부	252565.984	282432.669	3.799	034°51'56.50418″	127°54'05.43761″	20220922	고현면 이어리 77-1	철재	남해군청	
49	10357	도근점	중부	251444.405	282211.702	19.958	034°51'20.17724″	127°53'56.34290″	20220923	남해읍 심천리 531-4	철재	남해군청	
50	10358	도근점	중부	251430.102	282136.758	29.875	034°51'19.73496″	127°53'53.38796″	20220923	남해읍 심천리 537-8	철재	남해군청	
51	10359	도근점	중부	251362.472	282132.336	31.127	034°51'17.54189″	127°53'53.19005″	20220923	남해읍 심천리 659-56	철재	남해군청	
52	19522	도근점	중부	256873.969	290956.671	23.855	34° 54' 13.6625	127° 59' 42.6762	20220927	창선면 율도리 산50-8	철재	남해군청	
53	19523	도근점	중부	256915.859	291086.155	27.408	34° 54' 14.9799	127° 59' 47.7921	20220927	창선면 율도리 433	철재	남해군청	
54	19524	도근점	중부	256940.240	291177.214	31.761	34° 54' 15.7415	127° 59' 51.3880	20220927	창선면 율도리 산50-7	철재	남해군청	
55	19525	도근점	중부	256959.593	291238.178	30.732	34° 54' 16.3497	127° 59' 53.7965	20220927	창선면 율도리 247-4	철재	남해군청	
56	19526	도근점	중부	257016.048	291307.695	23.285	34° 54' 18.1589	127° 59' 56.5566	20220927	창선면 율도리 238-10	철재	남해군청	
57	16447	도근점	중부	251903.885	275153.881	43.588	034°51'37.05164″	127°49'18.67979″	20220928	서면 노구리 1421	철재	남해군청	
58	16448	도근점	중부	251941.252	275127.841	42.075	034°51'38.27100″	127°49'17.66681″	20220928	서면 노구리 1421	철재	남해군청	
59	16449	도근점	중부	251993.855	275112.654	41.799	034°51'39.98187″	127°49'17.08593″	20220928	서면 노구리 1430-8	철재	남해군청	
60	10360	도근점	중부	250581.310	281168.739	84.025	034°50'52.47422″	127°53'14.98932″	20220929	남해읍 아산리 산20-1	철재	남해군청	
61	10361	도근점	중부	250585.449	281202.383	78.116	034°50'52.59886″	127°53'16.31494″	20220929	남해읍 아산리 72-3	철재	남해군청	
62	10362	도근점	중부	250616.511	281238.890	74.717	034°50'53.59622″	127°53'17.76261″	20220929	남해읍 아산리 72-3	철재	남해군청	
63	10363	도근점	중부	247770.548	283829.889	40.046	034°49'20.49793″	127°54'58.71597″	20220930	남해읍 입현리 1003-5	철재	남해군청	
64	10364	도근점	중부	247725.131	283872.818	40.378	034°49'19.01160″	127°55'00.38873″	20220930	남해읍 입현리 1638-1	철재	남해군청	
65	10365	도근점	중부	247693.605	283824.448	46.094	034°49'18.00301″	127°54'58.47425″	20220930	남해읍 입현리 1638	철재	남해군청	
66	10366	도근점	중부	247640.180	283772.560	56.283	034°49'16.28494″	127°54'56.41353″	20220930	남해읍 입현리 1050	철재	남해군청	
67	10367	도근점	중부	247599.239	283807.523	67.626	034°49'14.94617″	127°54'57.77443″	20220930	남해읍 입현리 1051-1	철재	남해군청	
68	18276	도근점	중부	259613.945	283602.002	23.422	034°55'44.84008″	127°54'54.00514″	20221004	설천면 문의리 124-14	철재	남해군청	
69	18277	도근점	중부	259689.753	283677.094	17.919	034°55'47.27747″	127°54'56.99082″	20221004	설천면 문의리 143	철재	남해군청	
70	18278	도근점	중부	259734.404	283722.233	16.084	034°55'48.71280″	127°54'58.78528″	20221004	설천면 문의리 143	철재	남해군청	
71	10368	도근점	중부	249251.446	282488.761	7.668	034°50'08.94243″	127°54'06.47211″	20221004	남해읍 남변리 228-3	철재	남해군청	
72	10369	도근점	중부	249221.471	282518.032	6.048	034°50'07.96128″	127°54'07.61336″	20221004	남해읍 남변리 233	철재	남해군청	
73	10370	도근점	중부	249231.124	282682.865	4.319	034°50'08.22634″	127°54'14.10332″	20221004	남해읍 남변리 643	철재	남해군청	
74	13408	도근점	중부	247172.693	294036.224	158.933	34°48'57.8916"	128°01'40.0414"	20220913	삼동면 금송리 산187-1	철재	남해군청	
75	13409	도근점	중부	247201.374	294072.062	151.474	34°48'58.8103"	128°01'41.4628"	20220913	삼동면 금송리 산187-1	철재	남해군청	
76	13410	도근점	중부	247237.487	294096.800	145.134	34°48'59.9738"	128°01'42.4506"	20220913	삼동면 금송리 산165	철재	남해군청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77	19499	도근점	중부	251454.469	295795.166	62.191	34°51'16.2249"	128°02'50.9996"	20220913	창선면 진동리 산136	플라스틱	남해군청	
78	19500	도근점	중부	251390.386	295817.185	47.720	34°51'14.1382"	128°02'51.8399"	20220913	창선면 진동리 산136	플라스틱	남해군청	
79	19501	도근점	중부	251297.727	295812.408	24.528	34°51'11.1336"	128°02'51.6138"	20220913	창선면 진동리 745-1	철재	남해군청	
80	19502	도근점	중부	251275.891	295848.879	21.447	34°51'10.4127"	128°02'53.0403"	20220913	창선면 진동리 756-1	철재	남해군청	
81	19503	도근점	중부	251274.443	295916.819	17.587	34°51'10.3427"	128°02'55.7137"	20220913	창선면 진동리 760-2	철재	남해군청	
82	19504	도근점	중부	251261.429	295964.742	17.286	34°51'9.9041"	128°02'57.5945"	20220913	창선면 진동리 산132-14	철재	남해군청	
83	19505	도근점	중부	251256.781	296020.353	14.376	34°51'9.7345"	128°02'59.7813"	20220913	창선면 진동리 산132-15	철재	남해군청	
84	19506	도근점	중부	251221.451	296100.462	3.965	34°51'8.561"	128°03'2.9197"	20220913	창선면 진동리 715	철재	남해군청	
85	19507	도근점	중부	255917.792	291689.088	82.454	34°53'42.4019"	128°00'11.1441"	20220913	창선면 율도리 60-1	철재	남해군청	
86	19508	도근점	중부	255893.022	291783.150	79.017	34°53'41.5676"	128°00'14.8384"	20220913	창선면 당항리 914	철재	남해군청	
87	19509	도근점	중부	255798.461	291909.653	68.559	34°53'38.4584"	128°00'19.7826"	20220913	창선면 당항리 산151-2	철재	남해군청	
88	19510	도근점	중부	255766.809	292006.350	63.872	34°53'37.3999"	128°00'23.5779"	20220913	창선면 당항리 산144-4	철재	남해군청	
89	19511	도근점	중부	255767.012	292074.108	60.683	34°53'37.3844"	128°00'26.2462"	20220913	창선면 당항리 712-2	철재	남해군청	
90	19512	도근점	중부	255718.393	292168.071	55.644	34°53'35.7762"	128°00'29.927"	20220913	창선면 당항리 산140-2	철재	남해군청	
91	19513	도근점	중부	255714.371	292225.022	53.325	34°53'35.6271"	128°00'32.1681"	20220913	창선면 당항리 709-2	철재	남해군청	
92	19514	도근점	중부	255695.875	292278.680	50.626	34°53'35.0095"	128°00'34.2737"	20220913	창선면 당항리 산134-7	철재	남해군청	
93	19515	도근점	중부	255665.449	292328.647	47.986	34°53'34.006"	128°00'36.2292"	20220913	창선면 당항리 산133-2	철재	남해군청	
94	19516	도근점	중부	255576.005	292441.499	33.035	34°53'31.067"	128°00'40.6376"	20220913	창선면 당항리 산126-1	철재	남해군청	
95	17456	도근점	중부	252907.517	281319.957	54.824	034°52'07.90836″	127°53'21.75330″	20220919	고현면 대곡리 333-6	철재	남해군청	
96	17457	도근점	중부	252888.248	281379.673	46.011	034°52'07.26593″	127°53'24.09748″	20220919	고현면 대곡리 333-10	철재	남해군청	
97	17458	도근점	중부	252872.329	281438.032	41.960	034°52'06.73259″	127°53'26.38940″	20220919	고현면 대곡리 267-8	철재	남해군청	
98	18268	도근점	중부	255688.846	284108.451	11.792	034°53'37.33528″	127°55'12.53607″	20220919	설천면 진목리 산68-6	철재	남해군청	
99	18269	도근점	중부	255700.700	284148.421	13.929	034°53'37.70800″	127°55'14.11437″	20220919	설천면 진목리 산68-6	철재	남해군청	
100	17461	도근점	중부	256008.818	279718.047	3.775	034°53'48.99195″	127°52'19.75195″	20220926	고현면 대사리 911-2	철재	남해군청	
101	17462	도근점	중부	255999.018	279646.217	3.432	034°53'48.69428″	127°52'16.91980″	20220926	고현면 대사리 904-1	철재	남해군청	
102	17463	도근점	중부	256043.105	279647.661	3.648	034°53'50.12434″	127°52'16.99177″	20220926	고현면 대사리 913	기타	남해군청	
103	17464	도근점	중부	256082.452	279650.604	3.436	034°53'51.40019″	127°52'17.12114″	20220926	고현면 대사리 1379-13	철재	남해군청	
104	17465	도근점	중부	256111.944	279667.234	3.285	034°53'52.35241″	127°52'17.78618″	20220926	고현면 대사리 1379-13	철재	남해군청	
105	17466	도근점	중부	256105.698	279724.417	4.031	034°53'52.13358″	127°52'20.03602″	20220926	고현면 대사리 911-11	철재	남해군청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325호

남해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체육진흥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체육진흥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위임사항 정비

3. 주요내용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2년 11월 9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82, 팩스 055-860-8661
3) 메 일 : ykk@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스포츠마케팅팀(860-86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체육회 및 남해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① ---------- ---------- ---------- - 지원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32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진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남 해 군 수

□ **사 업 명** :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열람기간** : 2022. 10. 20. ~ 2022. 11. 04.(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3314

□ **의견제출기간** : 2022. 10. 20. ~ 2022. 11. 04.(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5-4외 2필지(819㎡)
- 토지소유자 : 박** 주소 : 경남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14번길 27-3 외 1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133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진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남 해 군 수

□ **사 업 명** :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열람기간** : 2022. 10. 24. ~ 2022. 11. 8.(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3314

□ **의견제출기간** : 2022. 10. 24. ~ 2022. 11. 8.(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상남도 이동면 무림리 산167-6 외 필지
- 토지소유자 : 김0엽(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793번길 78)외 2명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134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지방도1024호선 두곡지구 위험지역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종류** : 지방도1024호선 두곡지구 위험지역 개선공사

2. **출입구간** : 남해군 남면 당항리 42-7 외 15필지(붙임 참조)

3. **출입기간** : 2022. 10.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경남 남해군 남면 당항리

동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2096	도	5,347	548	국	국토교통부
	2	산308-2	도	3,583	2,174	국	남해군
	3	2103	구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4	42-7	답	22	22	김*엽	456
	5	42-6	도	68	54	박*길	456
	6	527-3	도	170	5	신*훈	402
	7	산308-1	임	2,169	24	김*환	부산광역시 수영구
	8	440-3	전	843	85	김*환	부산광역시 수영구
	9	산308-4	임	83	20	우*	453
	10	436-4	도	3	3	김*복	석교리 885
	11	436-3	답	1,384	1,108	김*재	울산광역시 중구
	12	436-2	도	520	33	국	남해군
	13	2095	구	695	125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산296-4	임	131	49	박*엽	석교리 86
	15	산295	도	3,413	1,060	국	남해군
	16	36-3	도	290	54	국	남해군
	소 계			18,738	5,381		

남해군 공고 제2022-1344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 공고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체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57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삼동 물건	150,000	2022.10.28 2032.10.27 (10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10번길 17	최행이	재개발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체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87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삼동 물건	150,000	2012.10.28 2022.10.27 (10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10번길 17	최행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남해 정치 제 157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정치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정치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 N 34-46-14.02, E 128-03-07.6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50,000 ㎡

보호구역	위도	경도
거	34-47-07-745	128-03-55.862
너	34-47-02.977	128-04-28.876
더	34-45-59.028	128-04-15.671
러	34-46-03.695	128-03-42.778

경위도 (WGS)	위도	경도	거리	
가	34-46-16.480	128-03-45.435	가나	500
나	34-46-13.750	128-04-04.816	나다	300
다	34-46-04.155	128-04-02.831	다라	500
라	34-46-06.884	128-03-43.451	라가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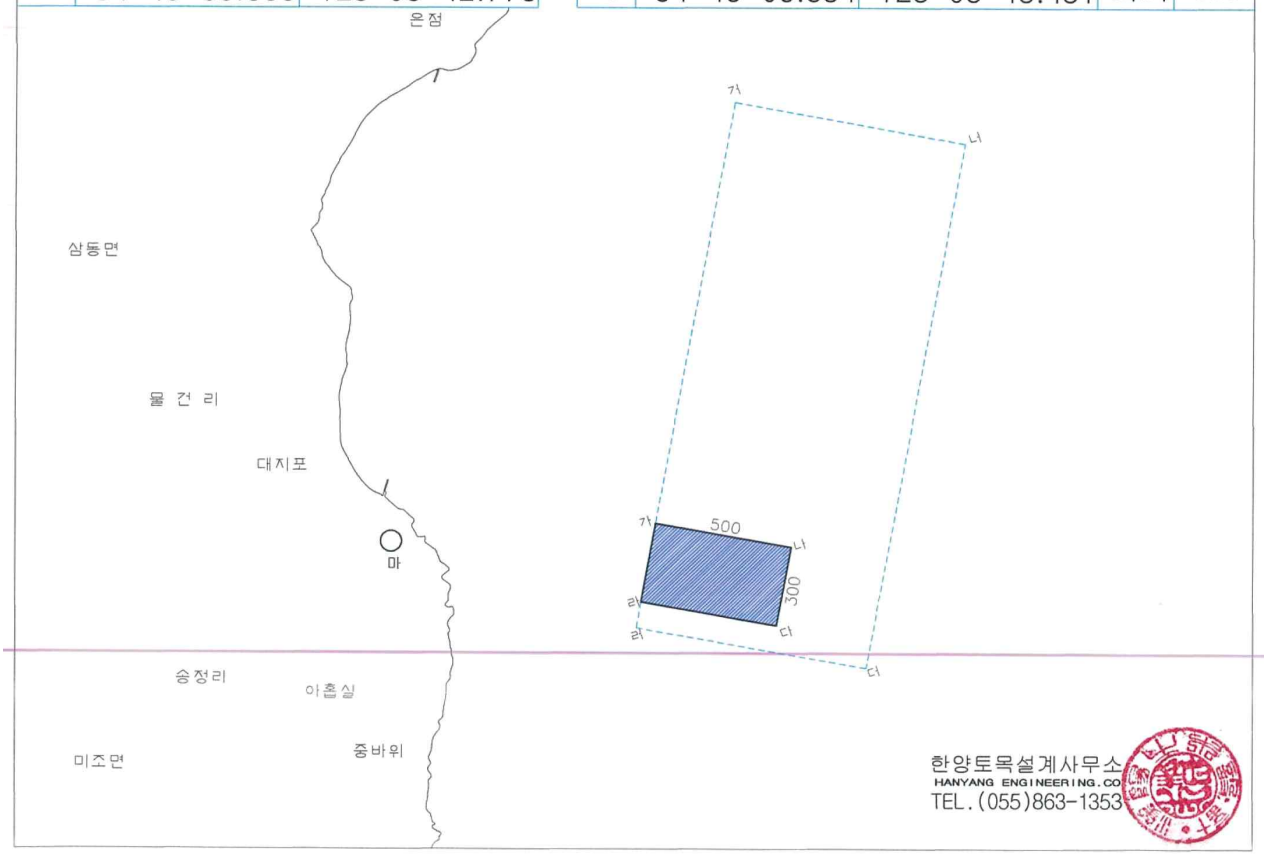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CO
TEL.(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2-1353호

군계획시설(꽃별테마공원 : 도로, 주차장, 녹지)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남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4)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남해 농촌테마공원(꽃별테마공원) : 도로, 주차장, 녹지)

○ 명칭 : 남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구 분	면적(㎡)	비 고
계	15,126	
도 로	734	
주 차 장	6,094	
녹 지	8,298	

4. 사업시행자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7,223	15,126						
1	남해군 양아리	113	1	답	197	197	강0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	〃	113	4	도	2	2	남해군					
3	〃	114		답	134	134	강0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	〃	114	1	도	18	18	남해군					
5	〃	139	2	답	545	39	남해군					
6	〃	139	3	도	7	5	김0만	남해군 양아리				
7	〃	139	4	답	499	9	남해군					
8	〃	140	2	도	132	129	남해군					
9	〃	140	3	답	79	79	손0호	남해군 양아리				
10	〃	140	4	도	383	28	남해군					
11	〃	140	5	도	219	219	남해군					
12	〃	141		전	231	231	박0인	남해군 양아로540번길				
13	〃	142	1	답	995	995	남해군					
14	〃	142	2	답	1,527	1,527	남해군					
15	〃	142	3	답	565	565	남해군					
16	〃	143		답	1,035	1,035	남해군					
17	〃	144		답	942	932	남해군					
18	〃	145		답	1,174	1,174	남해군					
19	〃	146		답	714	714	남해군					
20	〃	147		답	926	926	남해군					
21	〃	165	6	전	171	126	남해군					
22	〃	165	9	도	165	1	남해군					
23	〃	165	10	도	549	233	남해군					
24	〃	165	11	전	72	69	박0률					
25	〃	165	13	도	477	33	남해군					
26	〃	165	14	도	60	60	남해군					
27	〃	1946		도	5,802	1,049	국토교통부					
28	〃	산56		임	735	735	남해군					
29	〃	산56	1	도	543	445	남해군					
30	〃	산56	4	도	555	400	남해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1	남해군 양아리	산57	1	임	307	307	남해군					
32	〃	산57	5	도	1,133	787	남해군					
33	〃	산57	6	임	1,995	551	남해군					
34	〃	산57	7	도	455	247	남해군					
35	〃	산60	6	도	531	229	남해군					
36	〃	산60	7	도	101	46	남해군					
37	〃	산145	3	도	1,023	5	남해군					
38	〃	산148	1	도	1,289	464	남해군					
39	〃	산148	2	임	936	381	남해군					

남해군 공고 제2022-1357호

신비천 외 9개소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CCTV 설치 행정예고

신비천 외 9개소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재해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10. 31. ~ 2022. 11. 19.(20일간)

4. **공 고 방 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5. 설치 예정지

구분	설 치 장 소		설치 대수	촬영 시간	비고
	위 치	세부 장소			
계	46개소		83대		고정71, 회전12
신설	남해읍 평리 826-18	외금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	3	24시간	고정2, 회전 1
신설	남해읍 평리 763-3	외금마을 저수지 옆	1	24시간	고정1
신설	남해읍 평리 733	외금마을 저수지 옆	1	24시간	고정1
신설	이동면 용소리 555-2	용소마을회관 앞	2	24시간	고정2
신설	이동면 화계리 316-3	화계마을회관 앞	2	24시간	고정2
신설	이동면 화계리 268-2	화계마을 해안가	2	24시간	고정2
신설	이동면 신전리 157-3	금평마을 삼거리	3	24시간	고정2, 회전1
신설	이동면 신전리 1151-2	원천마을 방파제 부근	1	24시간	고정1
신설	상주면 양아리 1819-3	벽련 방파제 부근	2	24시간	고정2
신설	상주면 양아리 1533-2	두모마을 해안가 부근	2	24시간	고정1, 회전1
신설	상주면 양아리 642	소량마을회관 앞	2	24시간	고정2
신설	상주면 양아리 911-6	대량마을회관 앞	2	24시간	고정2
신설	삼동면 봉화리 766-2	삼화마을회관 앞	2	24시간	고정1, 회전1
신설	삼동면 봉화리 820-2	삼화천 부근	2	24시간	고정2
신설	삼동면 봉화리 987-2	봉화마을회관 부근	1	24시간	고정1
신설	삼동면 봉화리 122-2	화암마을 입구	2	24시간	고정1, 회전1
신설	미조면 송정리 87-6	가인포마을 입구	2	24시간	고정2

신설	미조면 송정리 121-2	노구마을 방파제 부근	2	24시간	고정1, 회전1
신설	미조면 송정리 산36-9	가인포방파제 부근	1	24시간	고정1
신설	미조면 송정리 466-3	초전마을 입구	2	24시간	고정2
신설	미조면 송정리 550-5	초전방파제 부근	1	24시간	고정1
신설	미조면 송정리 265-2	항도마을 입구	1	24시간	고정1
신설	남면 선구리 1054-2	사촌마을 입구	3	24시간	고정3
신설	남면 선구리 1145-2	선구마을 주변 도로	1	24시간	고정1
신설	남면 선구리 1338	선구방파제 부근	1	24시간	고정1
신설	남면 선구리 705-2	선구마을 입구	1	24시간	고정1
신설	남면 선구리 675-2	향촌 해안가 부근	1	24시간	회전1
신설	남면 선구리 470-2	향촌마을 삼거리	2	24시간	고정2
신설	서면 남상리 1791-4	염해마을 해안가 부근	2	24시간	고정1, 회전1
신설	서면 남상리 1591-1	염해마을 진입로	2	24시간	고정2
신설	서면 노구리 1289-2	유포회관 앞	2	24시간	고정2
신설	서면 노구리 1385-7	유포어촌 체험마을 부근	2	24시간	고정2
신설	서면 남상리 1396-18	남상마을 방파제 부근	2	24시간	고정2
신설	서면 남상리 1199-1	남상마을 진입로	2	24시간	고정2
신설	고현면 도마리 173-2	대곡 교차로	4	24시간	고정4
신설	고현면 도마리 223-2	동도마마을 진입로	1	24시간	고정1
신설	고현면 도마리 380-40	동도마마을 부근	1	24시간	고정1
신설	고현면 도마리 327-2	동도마마을 주도로	2	24시간	고정2

신설	고현면 도마리 산95-7	서도마 버스정류장	2	24시간	고정1, 회전1
신설	설천면 문의리 662-4	문의마을 버스정류장	3	24시간	고정2, 회전1
신설	설천면 문의리 617-4	문의마을 입구	1	24시간	고정1
신설	설천면 문의리 172-1	동홍마을회관 앞	2	24시간	고정2
신설	설천면 금음리 641	봉우마을 사거리	2	24시간	고정1, 회전1
신설	창선면 상신리 100-1	창선 수협 앞	3	24시간	고정2, 회전1
신설	창선면 수산리 207-2	창선고 뒤쪽 다리부근	1	24시간	고정1
신설	창선면 옥천리 50-3	옥천마을 버스정류장	1	24시간	고정1

※ 설치 여건에 따라 인근 지번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운영관리**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7. **설치목적** : 방범(어린이 보호 포함), 산불방지, 환경감시, 하천 감시, 법규위반 단속 등

8.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를 남해군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중 택일

다.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9일까지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 출 처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1) 주소 : (우) 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 전화 : 055-860-3294

3) FAX : 055-860-3727

남해군 공고 제2022-1363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자 함

다. 그 밖의 조문에 명시 된 이전 규칙명을 개정된 규칙명으로 정비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나.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신설

다. 제5조 제5항 중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해양환경국 환경과)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우52425)

○ 전 화 : 055-860-3278, 팩스 :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전화055-860-32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주변영향지역”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주민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영 별표 2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방법은 지원협의체 위원의 협의로 정한다.
④ 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주민지원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해군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3.>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3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기금의 운용계획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남해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원
2. 위촉직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대표, 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관련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나.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 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수당은 해당 월의 말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매월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 한다” 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남해군 공고 제2022-1372호

2022년도 제1회 남해군 환경공무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1회 남해군 환경공무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1. 근무예정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채용 분야	선 발 예정인원	담당 업무
남 해 군 해양환경국 환 경 과	환경공무직	1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청소차량 탑승, 생활쓰레기(재활용 포함) 수집・운반 - 노상・골목생활쓰레기 수거 등 환경미화업무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전일 기준 남해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는 사람

나. 응시연령 : 만19세 이상인 자(2003. 11. 1.이전 출생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

다. 사회통념상 환경공무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자를 제외한 신체건강한 사람

라. 주・야간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 1차 서류평가(100점)

1) 가산점 분류표에 근거하여 개인별 점수부여

2) 거주기간 및 부양가족은 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만 인정

3) 부양가족(공고일 전일 기준, 남해군 6개월 이상 거주자만 해당)의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③ 본인의 만18세 이하 직계비속

4) 가산점 분류표

항 목	기간 및 기준	가산점	증빙서류	비 고
· 남해군 거주기간 (최대 25점)	· 5년 이상	25점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포함)	· 남해군 거주자 우대
	· 4년 이상~5년 미만	24점		
	· 3년 이상~4년 미만	23점		
	· 2년 이상~3년 미만	22점		
	· 1년 이상~2년 미만	21점		
· 부양 가족수 (최대 20점)	· 7명 부양	20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3급이상 부양가족 가산점 1점 추가 부여	· 공고일 전일 기준 · 다자녀 가정, 부모 부양자에 대한 우대 · 장애인부양자 등에 대한 우대
	· 5명~6명 부양	19점		
	· 3명~4명 부양	18점		
	· 1명~2명 부양	17점		
	· 단독 세대주	16점		
· 자격증 소지 (최대 20점)	· 굴삭기운전기능사 · 지게차운전기능사 · 로우더운전기능사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추레라 · 1종 대형면허	5개 20점 4개 19점 3개 18점 2개 17점 1개 16점	· 면허증 사본 (공고일 이전 취득)	· 기술적 우대
· 자격증 운전 경력 (최대 20점)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4년 이상	· 경력 증빙서류	
	17점 / 18점 / 19점	20점		
· 취업보호(지원) 대상 (최대 15점)	· 국가유공자	15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의사자증명서 제출시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 의사자에 대한 우대 및 사회 취약계층 보호
	·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배우자 · 의사상자, 저소득층	14점		

※ 경력이 인정되는 대형차량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중)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 너비 ·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특수자동차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나. 2차 체력검정 시험(100점)

❍ 환경공무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체력 검사 2종목을 실시하고 점수 기준에 따라 평점 산출

❍ 종목 및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기 록	점 수
모래주머니 메고 50m달리기 (남20kg,여10kg)	❍ 호각을 붐과 동시에 앞에 놓여진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도착점(50m)에 도달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측정	도달할 때까지 경과시간 측정	50점
모래주머니 오래 들기 (남30kg,여20kg)	❍ 호각을 붐과 동시에 들어 올린 모래 주머니가 머리에 닿거나 머리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 측정	시간 측정	50점

❍ 심사 기준표

종 목 명	배점	점 수 부 여										
모래주머니 메고 50m 달리기 (남20kg, 여 10kg)	50	8.00초 이내	8.01.초~ 8.50.초	8.51초~ 9.00초	9.01초~ 9.50초	9.51초~ 10.00초	10.01초~ 10.50초	10.51초~ 11:00초	11.01초~ 11.50.초	11.51초~ 12:00초	12.01초~ 12.50초	12.50초 초과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모래주머니 머리 위에 들고 서 있기 (남30kg, 여 20kg)	50	5분 1초 이상	4분 31초 ~ 5분	4분 1초~ 4분 30초	3분 31초 ~ 4분	3분 1초~ 3분 30초	2분 31초 ~ 3분	2분 1초~ 2분 30초	1분 31초 ~ 2분	1분 1초~ 1분 30초	31초 ~ 1분	30초 이하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계	100											

❍ 모래주머니 메고 50m달리기(남20kg, 여10kg)
- 호명과 동시에 정면을 응시한 채 서 있는다.
- 호각을 붐과 동시에 앞에 놓여진 모래주머니(남:20kg, 여:10kg)를 어깨에 메고 도착점(50m)에 도달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측정
-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는 경우 재시험 불가하며 다시 주워서 달리는 경우 기록 측정
- 달리다 넘어지는 경우 재시험 불가하며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경우 기록 측정

※ 복장 : 간편한 복장(단, 스파이크와 축구화 착용 금지)

❍ 모래주머니 오래 들기 (남30kg, 여20kg)
- 호명과 동시에 제자리에 쭈그려 앉는다.
-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호각을 붐과 동시에 30kg(남), 20kg(여)의 모래주머니를 들고 일어서서 머리 위로 올린다.
- 시험관의 '시작' 호명과 동시에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하여 들어 올린 모래주머니가 머리에 닿거나 머리 아래로 내려올 경우 시간 측정을 종료

※ 복장 : 간편한 복장(단, 스파이크와 축구화 착용 금지)

다. 3차 면접평가(100점) → 서류평가 + 체력검정 점수합산 고득점자 3명 (3배수)
❍ 환경공무직으로서 공무수행에 대한 의식 및 인성 파악
❍ 청소관련 기초상식,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태도, 사명감 등으로 평가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부양가족수 ② 남해군 계속 거주기간 ③ 연장자

3. 응시원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11. 16.(수) ~ 11. 17.(목)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팀
❍ 접수방법 : 본인 및 대리 방문 접수 가능(※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 2022. 11. 1. (화) ~ 11. 15.(화)	남해군 홈페이지
원서접수 및 교부	❍ 2022. 11. 16.(수) ~ 11. 17.(목)	행정과
1차 결과발표	❍ 2022. 11. 18.(금)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2차 체력능력시험	❍ 2022. 11. 21.(월) 14:00	공설운동장 예정
1~2차 결과 발표	❍ 2022. 11. 22.(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차 면접시험	❍ 2022. 11. 23.(수) 14:00	군청 대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1. 28.(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남해군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이용 수집 및 동의서 1부.
마. 체력시험 응시동의서 1부.
바. 주민등록 초본(병역 및 주소변동 포함) 1부.
사.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의사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남해군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응시원서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최근 6개월 내 촬영사진 부착)
나.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남해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된 원본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반환 가능합니다.
마.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 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확인 후 발급)
바. 접수 기한(2022. 11. 17. 목 18:00)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입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 지정된 시험일 시험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 합니다.
자. 최종 합격 후라도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카.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사항은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055-860-3116)로 문의바랍니다.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8호

2022년 남해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 남해군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직 무 내 용
문화재관리 (문화체육과)	일반임기제 (7급 상당)	1명	2년	- 문화재 지정 및 관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 업무 - 문화재 인허가, 문화재 관련 연구·기획·자료관리 -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추진 - 고려대장경 관련 행사, 연구기획, 조사계획 및 자료 수집·관리 - 문화재 활용사업 등 공모신청 및 운영관리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연 령 : 만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결격사유>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문화재관리 (7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팔만대장경 판각지 복원, 문화재 지정 및 관리 등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선 임용 ▹**관련분야 및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역사학(사학), 고고학, 문화재(관리)학 분야 -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임근무(주40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함)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4. 채용 조건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보수수준**

구 분	연봉액(천원)		보수	근무시간	비고
	상한액	하한액			
문화재관리 **7급(상당)**	63,693	45,237	**하한액**	주당 40시간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유선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022. 11. 14. ~ 2022. 11. 16.	서류전형	-	2022. 11. 18.(예정)
	면접시험	2022. 11. 21.(예정)	2022. 11. 22.(예정)

* 면접시행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860-3113)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 A4용지 2~3매 분량
4.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자필 기재

구 분	내 용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부본만 유효 (*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 055-860-3113)

  – 업무관련 문의 : 남해군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 055-860-8632)